

#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석규 의원)

|          |   |
|----------|---|
| 의안<br>번호 | 2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김석규, 정숙남, 공유신,  
송은영 의원(4명)

## 1. 제안이유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개정으로 복지재단 이사장을 시장으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직위가 시장으로 변경되어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서 제외됨. 제2조에 단일 항만 존재함에 따라,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유지하되 항 번호 표기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 2. 주요내용

- 양산시 복지재단 이사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서 삭제하고, 항 번호 표기를 삭제(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  
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을 “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시설관  
리공단 이사장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11.>